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1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15

발의자 : 이만희 · 홍문표 · 민경욱

이양수 · 홍문종 · 조훈현

김석기 · 이우현 · 서청원

김도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포장 곁면에 품목,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,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이외의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음.

이에 품종 · 등급 · 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및 제30조의2 신설).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제1절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권장품질표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(축산물을 제외한다. 이하 “포장농산물”이라 한다)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준규격품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곁면에 해당 농산물의 등급·당도 등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권장품질표시(이하 “권장품질표시”라 한다)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포장농산물을 유통·판매하는 자는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 포장 곁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
2.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의 시료 수거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에 따라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5조의2(권장품질표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(축산물을 제외한다. 이하 “포장농산물”이라 한다)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준규격품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곁면에 해당 농산물의 등급·당도 등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권장품질표시(이하 “권장품질표시”라 한다)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포장농산물을 유통·판매하는 자는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 포장 곁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30조의2(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)</u></p> <p><u>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2.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의 시료 수거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에 따라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